

미국 판결

**보도 대상자가 한 말을 다른 말로 풀어 쓴 것이 원래 한 말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의로 알고 한 것’, 즉 ‘실질적 악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FREEDOM NEWSPAPERS OF TEXAS v. Conrado M. CANTU]

텍사스 주대법원

FREEDOM NEWSPAPERS OF TEXAS 등(피고 겸 상고인) 對  
Conrado M. CANTU(원고 겸 피상고인)

2005년 6월 24일 선고.

텍사스 제4구역 항소심 재판장 Valdez 판사의 판결에 대한 상고임.

신문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임. 피고의 약식 판결(Summary Judgement,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법률적 판단 문제만 남아 있는 경우에, 정식재판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선고하는 판결)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고,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시 상고를 함.

당원(텍사스 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함.

**대법관 Brister:**

Texas 주 Cameron 카운티의 전직 보안관이 Brownsville Herald 신문사와 2명의 전직 피용자(이하 “Herald”라고 부른다)를 상대로 “2000년도 선거 직전에 벌어진 후보자 토론에 관한 2개의 기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Herald 측의 약식판결 신청을 기각하였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하지만 당원은 “실질적 악의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바이므로,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I

2000년 11월의 총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0년 10월 4일에 Cameron 카운티의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Brownsville 공립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후보자들 중에는 보안관선거에 입후보한 민주당 측 후보이자 이 사건 피상고인 Conrado M. Cantu와 그의 경쟁자인 공화당 후보 Terry Vinson이 있었다. 두 후보자는 약 30분간 발언을 하고 질문에 답변하였다.

청중 한 사람이 이 토론내용을 녹음하였다. 약식판결기록에 나타난 위 녹음의 녹취록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은 “그 녹취록이 후보자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 있다. 토론 중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

**Cantu:** 경찰학교에서 당신이 나의 교관이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훌륭한 교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Los Fresnos 시의 경찰서장이라면 왜 사람들이 그를 경찰서장으로 선출하였을까 의문이 남는다. 그 곳에 나가 이웃 앞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의 문제점이 무엇 인지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나는 이중문화권자(bi-cultural)여서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사람을 알고 있으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봉사정신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 \* \*

**Cantu:** 나는 이미 말한바와 같이 나의 봉사정신 때문에 학교구역이나 카운티 다른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 당신이 11월 7일 투표를 하러 갈 때 마음 속 깊이 진정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이 나라의 모든 납세자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Vinson씨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는 교관일 뿐 보안관이 아니다. 당신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보안관으로 선출하여야 하고, 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지역사회에서 무엇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려면, 또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행동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만들

거나 우리가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멈추게 하려면, 이중문화권자(bi-cultural)이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은 이 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철이 들 필요가 있다. 성장할 필요가 있다.

**Vinson:** 그는 자신이 이중문화권자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는 우리 구역 사회에 동양인들, 필리핀인들, 중국인들, 일본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을 위하여 의사를 소통하여 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Cameron 카운티의 길거리에서 13~14년간을 일해 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해 본 일이 없다. 당신이 할 일은 보고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중문화권자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장벽에 불과하다. 나는 이중문화권을 믿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고, 똑같이 취급되어야 하고 함께 존경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 \* \*

**Vinson:** 나는 단짙주의(compadreism)를 참을 수 없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성장하지 않았다. 그 점은 사과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이 점 한 가지만은 보장한다. 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할 것이다.

Herald 신문사는 Brad Pierce로 하여금 위 토론을 취재하도록 하였다. 그는 메모를 하였지만, 녹음은 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그의 기사는 편집장이 덧붙인 아래의 헤드라인과 함께 신문의 첫 페이지에 실렸다.

Cantu: “앵글로계 미국인은 Cameron 카운티의 보안관이 될 수 없다”.

2000년 선거: 민주당 후보가 자신이 히스패닉 혈통인 것을 강조하다.

Conrado Cantu는 수요일에 개최된 그의 정적 Terry Vinson과의 보안관 선출 후보자 토론회에서 “앵글로계 미국인은 Cameron 카운티의 보안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Cantu는 Vinson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은 히스패닉 출신이고 주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안관으로서 적격이란 점을 강조하였다.

Cantu는 그가 이중문화권자이기 때문에 더 나은 후보자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Vinson은 “이중문화권이란 사람들이 갖다 붙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장벽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의 커다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고 믿는다”고 답변하였다.

두 명의 후보자는 ‘좋은 정부를 위한 남(南)텍사스 사람들’이 후원하는, 수요일에 열린 공공도서관에서의 토론회에서 30분이 넘는 시간을 팽팽히 대립하였다.

Cantu는 현재 자신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형사상 직권남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화를 냈고, 그가 이 문제를 토론하려 했다고 말했으며, Vinson이 자기를 속이려 했다면서 그를 비난하였다.

Cantu는 “나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열심히 일할 것이고, 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antu는 “법집행을 3년 반밖에 하지 못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보안관에 적격자임을 강변하였다.

Cantu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인데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지 못한다면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

가? 나는 우리 카운티의 보안관이 될 욕구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경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당신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의 경력에서 보듯이 20년 이상 법집행을 하여 왔고 경찰훈련 교관을 지내 온 Vinson은, Cantu가 보안관 자격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경험이 없는 풋내기 경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Vinson은 “시간이 됐다. 나는 일할 준비가 되어있다. 나는 직원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 나는 경찰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우리 모두 차이점이 많다. 문제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Vinson은 “보안관 부서를 재정비하고, 보안관 Omar Lucio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부보안관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단짠주의(compadreisim)를 참을 수 없으며, 보안관 부서에 정직과 책임을 주입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Cantu는 “경찰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주거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antu는 “우리 카운티에서 수많은 강도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Vinson은 강도문제도 중요한 이슈라는 점은 동의하였지만, 그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마약을 몰아내야 하고 그 일을 할 사람은 자기라고 강조하였다.

그 기사는 다른 후보자들 간의 토론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다음 날 그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그 신문사 편집장인 George Cox는 그 기사에 대하여 Pierce와 대화를

하였다. Pierce는 Cox에게 “Cantu는 ‘앵글로’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기사의 요지는 정확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날 아침 Cantu는 Herald 신문사 사무실로 찾아와 Cox에게 신문기사에서 “앵글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는 토론의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왔는데, Cox는 그 테이프를 들어보기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Cox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는데 동의를 하였고, Cantu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인터뷰를 하기 위하여 Pierce를 만났다.

다음 날인 2000년 10월 6일 토론과 관련하여 두 번째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 기사 내용은 전적으로 다음과 같다.

**보안관 후보자는 “인종문제는 이슈가 아니었다”고 말하다.**

**선거: Cantu는 “이 지역사회에서는 이중문화권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다.**

Conrado Cantu 경관은, 이번 주에 열린 Cameron 카운티의 보안관 선거 토론회에서 “그의 정적이 히스패닉이 아니어서 보안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한 그의 언급을 바로 잡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후보인 Cantu는, 그의 선거캠페인에서 인종 문제를 이슈로 삼을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그가 Rio Grande Valley 출신이고, 그 지역 주민 대다수의 욕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 Terry Vinson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Cantu는 “Rio Grande Valley의 주민들은 이중문화권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중문화권자이기 때문에 Cameron 카운티의 최고 법집행권자로서 주민을 대표할 최고의 후보라고 설명하였다.

Cantu는 ‘좋은 정부를 위한 남(南) 텍사스 사람들’

이 후원하는 수요일에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듣기에는 Vinson을 인종 차별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젊은 농구코치이자 Cantu의 지지자인 Chris Patterson은 “Cantu의 발언 취지가 잘못 오해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atterson은 “나는 그렇게 듣지 않았다. 나는 Cantu에게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앵글로계 미국인은 보안관이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은 Cantu의 말을 제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표현은 Cantu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었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그러나 Vinson은 “자신이 Valley 지역 출신이 아니라서 히스패닉 주민과 연결될 수 없다”는 Cantu의 말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Vinson은 “내 출신 성분 때문에 내가 히스패닉 문화와 소통을 하거나 연관을 맺을 수 없다는 취지로 들렸다. 그것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나를 속아내려 하였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나는 무척 화가 났었다”고 말했다.

독립적으로 투표를 한 Henry Gonzalez는 “이 지역 주민의 90%가 히스패닉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는 아주 요점을 잘 짚은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여러 인종이 거주하고 있으며, 히스패닉계가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Cantu는 “내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내가 남 텍사스에서 자랐고, 주민들이 Cameron Park에 살던지 아니면 Valley International Country Club에 살던지에 관계 없이 모든 주민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앵글로계 미국인은 보안관이 될 수 없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중문화권자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을 보호할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요일 저녁까지 Cantu를 지지하고 있었던

Tracy Larimore는 “그가 앵글로계 미국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한다면, 왜 Vinson은 히스패닉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Larimore는 “나는 ‘보안관이 되어야 하는 것은 히스패닉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그가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한다. 그가 말한 그대로였으며, 이제 그는 이 점을 홍보하고 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Patterson은 “Cantu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를 단순한 경관으로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가 지역사회 젊은이들의 복지에 매우 관심이 많은 관대하고 자상한 사람이란 것을 곧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요일에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Cantu는 보안관이란 직책에 대한 그의 에너지와 열정을 말했고, 반면 Vinson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강조하였다.

Cantu는 결국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보안관이 된지 9개월이 지나 그는 Herald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Herald 신문사는 약식판결 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Herald 신문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제13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였다. 당원은 Herald 신문사의 상고를 받아들인다.

## II

A. Cantu와 같은 공직자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기기 위하여는 ‘Herald 신문사가 실질적 악의를 가지고 거짓이면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보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약식판결 단계에서 Herald 신문사는 ‘문제가 된 기

사가 거짓임을 알고서 또는 진실인지 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함으로써 보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법률문제로서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음’을 부인하였다.

Herald 신문사는 약식판결 신청을 하면서 발행인, 편집장, Pierce와 Cox의 선서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진술자 모두가 기사의 보도 전에 그 기사의 부정확성이나 그 기사의 부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Cantu나 항소심은 이 선서진술서들이 약식판결 적용기준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물론 배심원들은 이러한 선서진술서의 신빙성을 받아들이기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배심원들이 이 선서진술서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그 것이 곧바로 반대 사실을 지지할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Herald 신문사가 ‘악의 없이 보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약식판결을 하여서는 안 되는 반대증거를 제출할 입증책임이 Cantu에게 돌아간다.

항소심은, 신문사 측의 악의를 암시하는 정황증거를 적시하면서 Cantu가 그러한 입증을 하였다고 판결하였다. 그 증거들에 대하여 당원은 반대의 결론을 내린다.

B. 기사가 보도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antu의 주된 주장은 Herald 신문사의 첫 보도기사 헤드라인과 그 첫 문장에 나타난 단어를 그가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Herald 신문사는 이를 시인하고 있다. 항소심은 “Pierce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후보자들의 발언을 들었고, Cantu는 ‘앵글로계 미국인은 Cameron 카운티의 보안관이 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악의’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항소심과 달리 Herald 신문사는 위 마지막 문장에 인용부호를 붙인 적이 없다. 후보토론회에서 Cantu가 한 말의 일부는 인용부호가 붙었지만, 이 문장은 인용부호가 없었다. Cantu는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기사 헤드라인에 사용된 콜론 부호는 인용부호와 마찬가지로 주장하였다.

Masson v. New Yorker Magazine, Inc.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기자의 말을 말한 사람 본인의 말처럼 보도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악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인용부호는 그 문장이 말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인용부호는 독자로 하여금 그가 '話者의 말을 그대로 읽고 있는 것'이지 '글 쓴 사람의 의역이나 간접적인 해석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話者의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모두 악의의 증거가 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메모에 의존하는 기자로서는 종종 화자의 말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으며, 녹음에 의존하는 사람들조차도 지면 부족과 편집 방침 때문에 화자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고 있다.

[1] 대신 대법원은, 재구성(변경)된 말이라도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화자가 실제로 말한 단어(문장이 아님)'라고 오인하게 하고, 그 재구성(변경)이 실질적이라면 악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당원이 최근에 실시한 바와 같이 '통상의 독자 기준'은 주관적이라기 보다는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문맥 속에서 그 전체 기사를 읽는 일반적 지식을 가진 통상의 독자'를 가정하여 말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3가지의 명백한 단서를 살펴보면, 일반 독자들은 'Herald 신문사가 Cantu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였다기보다는 해석을 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첫째, 일반 독자들은 '인용문구가 Cantu의 말 중 8개에는 붙어 있지만, 문제가 된 말에는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둘째, 일반 독자라면 그 기사의 특정 형식, 즉 각 후보자가 한 말의 요약이 첫 문장에 나오고(예를 들어 첫 번째 기사의 1, 6, 8, 11, 14번째 문장) 그 요약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용부호가 붙은 1~2개의 문장이 뒤이어 나온다. 글의 문맥으로 보아 통상의 독자들은 인용부호를 붙인 문장의 앞에 쓰여진 '기사의 첫 헤드라인과 첫 문장'이 Cantu의 말을 바뀐 것이란 점을 이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개의 기사 모두 명예훼손적인 보도라고 주장되고 있지만, Herald 신문사의 2번째 기사는 "나는 '앵글로계 미국인은 보안관이 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Cantu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다. 2번째 기사 내용 중에는 이러한 주장에 반하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후보자 토론회에서 "어떤 참가자들이 듣기에는 Cantu가 인종 차별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는 기사는, 그가 말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말했다기 보다는 묵시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당원은 Cantu가 명예훼손적인 보도라고 주장하는 2개의 기사들의 전체적인 문맥에 기초하여 살펴볼 때 '일반적인 독자들이라면 Herald 신문사의 기사가 Cantu의 말을 바뀐 것이거나 해석한 것이라고 이해하였을 것이다'라고 판시하는 바이다. 따라서 'Cantu가 했다고 주장하는 말을 Cantu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만으로는 '신문사의 악의'에 대한 입증으로 부족하다.

C. [3]물론 고의로 공적 인물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인용부호 안에 들어있든 들어있지 않든 간에 명예훼손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한 말을 다른 말로 풀어 쓰는 것은, 만일 그 풀어 쓴 것이 원래 한 말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과 Gertz v. Robert Welch, Inc. 사건에서 말하는 ‘고의로 알고 한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Cantu는 Herald 신문사가 ‘자신이 이중언어자이고 이중문화권자’라는 말을 ‘인종과 민족’에 관한 말로 바꿔 쓰면서 결과적으로 고의적이고도 실질적인 변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원은 약식판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Cantu의 주장, 즉 그가 ‘이중언어자이고 이중문화권자’라는 점만을 의도한 것이라는 주장이 진실하다고 가정한다. 더 나아가 당원은 ‘통상의 배심원이라면 그 기사를 보고 Cantu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의도한 것이라고 결론내렸을 것’과 ‘두 가지의 차이는 실질적인 것’이라는 Cantu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곧바로 ‘신문사의 악의’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Cantu는 ‘신문사가 고의로 그의 발언을 왜곡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그 내용이 부적절하여 언론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더라면 도저히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애매모호한 사실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오역을 하였다고 하여 오역한 사람에게 악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Time, Inc. v. Pape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사한 명예훼손 소송을 언급하였는데, 거기서는 문제의 단어에 대하여는 논란이 없었지만 그 의미는 모호하였다. 그 사건에서 경찰의 가혹행위에 관한 미국인권위원회의 보고서는 시카고 경찰의 직권남용에 관한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Time 잡지사는 위원회의 보고서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그 보고서에 나타난

“주장된”이란 단어를 생략한 채 그 주장을 사실로 언급하였다.

그런데 위원회의 보고서는 그 사건을 “주장된” 것으로 열거하였지만, 사실상 그 보고서는 그 주장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터무니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하였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내용을 “경찰 가혹행위에 대한 11가지 전형적인 사건에서 주장된 사실들”이라고 요약하였는데, 만일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어떤 가혹행위에 대한 “전형적인 사건”이 될 수 없다. 그 보고서는 각 사건의 진실성 여부는 법원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가혹행위에 대한 다른 증거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후 문맥에 비추어 ‘시카고 사건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위원회의 보고서가 암묵적으로 말한 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Time 잡지사가 “주장된”이란 단어를 누락한 것은 애매모호함으로 가득 찬 서류에 대한 수많은 가능한 합리적 해석 중 하나를 채택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한 의도적인 해석의 선택은 잘못된 생각을 반영하고 있을지라도 New York Times 판결 하에서 “악의”에 관한 배심원 문제를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주장된”이라는 단어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악의’문제를 배심원 앞으로 가져가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원회 보고서에 나타난 단어의 문맥과 그 보고서의 전체적인 의미에 대한 비본질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가 아닌 ‘해석이나 판단에 대한 오류’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책임 기준을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에서 토론회에서의 Cantu의 발언 역시 애매모호함으로 가득하였다. Cantu는 누구나 이중언어자나 이중문화권자가 될 수 있듯이 그의 발언이 인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 토론회에서의 문맥을 보면, Cantu는 자신을 그의 정적과 구별시키고 있다. Cantu는 그의 증인진술서에서 ‘자

신은 토론상대방이 히스패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지를 몰랐다는 점을 시인하였다. 이는 적어도 그가 '이중언어자'란 단어를 후자의 의미보다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Cantu는 왜 그의 토론상대방이 Rio Grande Valley에서 Cantu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법집행을 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중문화권자가 아닌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Cantu의 상대방은 'Cantu의 발언이 인종이나 민족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명백하다. 상대방의 해석 때문에 Cantu의 발언 자체가 애매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Cantu는 토론의 나머지 시간 동안 상대방의 잘못된 해석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토론한 날부터 지금까지 Cantu의 설명, 즉 '그는 단지 출생장소, 모국어 및 대다수 주민의 욕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 뿐'이라는 그의 설명은 마찬가지로 애매모호하다. 출생장소와 모국어가 필연적으로 인종적 특성이나 민족성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이런 것들이 그런 특성의 대용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왔다.

Cantu는 Herald 신문사의 첫 보도기사에서 언급된 단어들을 사용한 적이 없었지만, 판단기준은 '그 요약보도가 Cantu가 말한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다. 민족적 유대나 인종적 편견에 호소하는 것은 항상 명시적인 말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대법관 Peeples가 배심원 요지의 문맥과 관련하여 이러한 호소를 분석하면서 말한바와 같이, 교묘하게 민족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교묘하게 뭉뚱그리려는 계획에 보상을 주는 것이 되고 만다.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헤드라인은 만일 후보자들이 명백하게 민족적 감정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면 소송거리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은밀하

게 민족적 감정에 호소한 후보자에 대하여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처벌함에 의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는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조한 후보의 주장이 인종적 감정에 호소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후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지역유권자로부터 자신을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 더욱이 유권자들과 그들의 대리인을 동일시하는 것은 공화정부가 자신이 봉사하는 국민을 반영한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맥은 실질적으로 그 이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후보자의 인종적 배경의 차이는 토론에 참석한 자들에게는 너무도 명백하였고, 당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Cantu가 자신을 구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말들은 때때로 은밀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말들과 유사하다. 더욱이 이력(경력)은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의 구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청중은 이력의 문제이다 - 선거기간 중 이루어진 통계조사에 의하면 Cameron 카운티 주민의 84.3%가 히스패닉이나 라틴계 사람들이었다. 만일 Cantu의 유일한 목적이 지역적 유대를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그는 덜 애매모호한 단어를 선택했어야 했다.

Cantu가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배심원들에게 달려있지만, 'Herald 신문사의 보도기사가 Cantu가 말한 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헌법상 법관에게 주어져 있다.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당원은, 토론에서의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볼 때 'Herald 신문사의 보도기사는 토론회에서 Cantu가 말한 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였다'고 판시하는 바이다. 따라서 보도기사 그 자체만으로는 '실질적 악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D. 항소심은, 실질적 악의에 관한 사실 문제를 형성

한다고 믿고 있는 4가지의 정황증거를 열거하였다.

[4] 첫째, Cantu는 그의 증인 진술서에서 Herald 신문사 기자들이 말한 여러 개의 법정 외 진술, 즉 신문사 임원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자세히 적었다. 이러한 소문이 진실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단지 '나쁜 의도'를 입증할 뿐이지 '실질적인 악의'에 대한 증거는 아니다. 배심원들은 피고 측의 "혐오, 심술, 나쁜 의도, 해질 의사"를 들어 피고 측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정 관점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압력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악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실질적 악의는 진실에 대한 피고의 태도에 관한 것이지, 원고에 대한 피고의 태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일련의 거짓 주장으로 드러난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다면 악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편견 없는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하여 악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둘째, 항소심은 '신문사가 Cantu로부터 이의제기와 함께 토론회의 녹음테이프를 받고 난 후에도 그 내용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한바 없다'는 증거로 두 번째 기사를 지적하였다. "공적 인물이 자신에게 해로운 주장을 부인하면서 그 사건에 대한 다른 해명을 하였다는 것'을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가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였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정치계에서는 "그러한 부인이 너무 흔한 것이어서, 양심적인 기자로 하여금 오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Herald 신문사의 신속한 후속기사는 Cantu가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과 그의 지지자들의 의견을 싣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 악의가 없다는 증거이다. 더욱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두 번째 기사에 실린 Cantu의 말은 원래 한 말만큼이나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사의 내용 자체는 실질적 악의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6] 셋째, 항소심은 Cox가 첫 번째 기사를 읽고 든

진 질문들을 들어 '신문사는 그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질적 악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의 초점은 편집과정에서의 피고의 마음상태에 맞추어야 한다. 신문이 인쇄되고 배포된 후의 사건에 관한 증거는 쟁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7] 마지막으로, 항소심은 '기사를 다루는 Herald 신문사의 방법을 비판하고, Cantu에 관하여 편견을 가진 보도의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확인한' 전문가 저널리스트의 의견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악의라 함은 피고의 정신상태에 관한 것이데, 그 전문가는 그 방면에는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었다. 또한 그 전문가의 의견은 '보도된 기사 그 자체'와 '이미 토론된 정황증거'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 증거가 증거력이 있다고 하여도, 그의 의견은 "그 기사들은 Cantu가 한 말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신문사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

\* \* \*

"정부활동에 대한 뉴스의 대부분이 보도, 연설, 기자회견 등에 대한 설명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한 활동의 대부분이 인터넷 접속이나 충분한 시간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하여 완전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 요약만을 제공하는 수많은 전통적인 언론 및 방송사에 의존한다. 그 결과 언론보도는 일반적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그대로 보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내용의 요지를 걸러 추출하거나 내포한 뜻을 분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출처에서 나타난 단어들을 그대로 완전하게 인용하는 것로부터 벗어날 경우 발행인은 불가피하게 한정된 언어로 수많은 선택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건국 이래 정치후보자들은 '이러한 선택이

때로는 가장 노골적이고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해석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불평하여 왔다. 그러나 헌법상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다.

당원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법적 문제로서 'Herald' 신문사의 기사는 Cantu가 말한 내용의 요지를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약식판결의 요건은 성

립된다. 따라서 Herald 신문사의 기사에 있는 오류는 '과실'은 될지언정 '실질적 악의'는 되지 않는다. 당원은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Cantu의 청구를 기각한다. □

출처 : Media Law Report Vol.33 No. 37, PP.1907 ~ 1916  
번역 : 윤 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 독일 판결

### 반론보도가 명백하게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

해당조문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출판법 제11조

#### 판결요지

1. 반론보도가 명백하게 사실을 오도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주장이 보충이나 제한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 사실을 오도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주 상급법원 뒤셀도르프(Dusseldorf) 2004년 9월 29일자 판결 - 15 U 118/04

#### 사실관계

원고(Verfugungsklager : 法定原告, 이하에서는 원고로 통칭함)는 경찰서장이자 주택임대인이다. 피고(Verfugungsbeklagte : 法定被告, 이하에서는 피고로 통칭함)는 일간지 "R"을 발행하고 있다. 주택관리 및 청소업체를 경영하는 W부인이 원고를 고발했기 때문

에 형사소송법 제170조에 의거하여 중간에 중단된 수사절차가 다시 진행되었다.

2004년 3월 27일에 일간지 "R"의 지방판 K의 1면에 "원고가 여자 임차인이 사망한 후에 그녀의 유산관리인의 동의도 없이 다른 경찰관의 부당한 도움을 받아 그녀의 주택에 출입을 하며 여러 가지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갔으며, 특별한 관리를 받는 범죄기록철을 열람하여 임차희망자들을 몰래 조사하였다"라는 상세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또한 신문은 "나는 모든 사안을 직업적 시각으로 본다"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특징짓는 문구의 기사를 거듭해서 실었다. 물론 원고는 범죄기록철에서 자신의 미래의 잠재적인 임차인들을 조사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2004년 3월 29일에는 일간지 "R"의 지방소식란 M에 "이웃사람들로부터"라는 제목으로 3월 27일자 신문기사 중 "나는 모든 사안을 직업적 시각으로 본다"라는 제목만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같은 내용의 기사가 다시 실렸다. 이 신문기사는 3월 30일에 "이웃사람

들로부터”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사안이 변하지 않은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실렸다.

원고는 2004년 3월 30일 피고에 대하여 반론보도기사의 게재를 요구하였다. 2004년 4월 5일에 원고는 또다시 반론보도기사의 게재를 요구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2004년 3월 31일 지방관 K에 “검찰이 정보의 부당한 사용에 대하여 수사하다”라는 제목으로 검사 K가 원고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신문에는 원고가 특별한 관리를 받는 범죄기록철을 열람하여 제3자의 비밀을 알아내 질책을 받았다는 사실과 주 정보보호감독관이 그 서류를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원고는 2004년 4월 22일에 반론보도기사의 게재를 공식적으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4년 4월 26일에 이 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원고는 신문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주장들, 즉 원고가 주택에 몰래 침입해서 물건을 가지고 갔으며, 특별한 관리를 받는 범죄기록철을 열람하여 의심가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한편 경찰서에서 범죄기록철에 있는 전자자들을 조사하게 하여 미래의 주택임차 희망자들을 조사함으로써 범죄기록철 내에 있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신문기사의 보도 내용에 대하여 이는 모두 거짓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법원의 중재 없이 반론보도의 게재에 대하여 가처분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희망한 반론보도기사의 내용에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표현이 있었으며, 신문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형법상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실제로 신문기사의 내용은 원고의 인터뷰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형사고발로부터 제기된 비난, 즉 원고가 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2004년 3월 30일자 반론보

도의 내용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는 기사내용에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보도 때문에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경찰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였다는 사실도 2004년 3월 30일자 반론보도내용을 출처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요구하고 있는 반론보도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하였다.

주법원은 2004년 6월 23일자 판결로 2004년 5월 4일의 가처분청구를 항목 I3과 I4와 관련해서만 인정했다. 이 외에도 주법원은 피고의 가처분조치를 취소하고, 관련법을 근거로 제출된 가처분청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즉각 항소하여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임차희망자들을 수사한 바가 없다고 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사에 실린 주장이 완전히 허위의 사실로 근거가 없다고 하는 등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 반론보도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법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원고가 서류를 구체적으로 보았는지 또는 경찰의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지가 아니라,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조사를 남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 결정이유

원고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출판법(이하는 주 출판법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에 의거한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장은 가처분 조치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과는 별도로 적법하다. 이는 주 출판법 제11조 제4항 제3문이 가처분조치규정의 적법한 적용은 청구권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확신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본 안판단이 배제된 것을 전제로 해서 인정하고 있기 때

문이다.

특히 가처분조치규정을 근거로 한 신청서에서 항목 I3과 I4에 대한 명백한 반론보도문의 게재규정과 그에 기인하여 창설된 주 출판법 11조 제1항에 의한 원고의 청구권의 소멸은 서로 모순된다.

원고에게 반론기사의 게재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반론보도기사를 게재할 의무는 주 출판법 제11조 제2항 a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반론보도문은 명백하게 사실을 오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반론보도청구권과 함께 따라야 하는 것은 반론보도 기사를 통해 당사자가 - 원고의 관련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공청회 석상에서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공중에게 변명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언론은 이에 이익을 제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청구권은 공공의 의사형성에 대해 현대의 언론이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론보도기사의 게재를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동시에 출판법상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된 독립기구는 객관적으로 더 정확한 정보제공과 어떠한 상황을 보도할 때 입장을 제대로 표명할 기회가 차단되어 정말로 위협해질 수도 있는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는데 유용하다.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법적 형태는 알려진 바와 같이 간단하면서도 규정에 잘 나타나 있다.

법원이 심사를 할 때 본질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원고가 주 출판법 제11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사실주장을 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어떤 사실에 대한 반론보도는 최초기사가 공표되었을 때 알려진 사실로 한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이다. 특히 허위의 반론보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최초 보도의 허위성 또는 본안소송에서 검증가능성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가처분청구에 대한 규정적용과 관련한 반론의 진실성이 궁극적으로 심사될 수 없으므로 반론보도는 단지 진실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 반론보도는 바로 “거짓의 확증증명인”을 받은 경우, 명백하게 법원에 의해 허위성이 밝혀지는 경우 또는 명백하게 사실을 오도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실을 오도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단지 논쟁의 여지가 없거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주장되어야 할 것이다(뮌헨 주 상급법원, NJW-RR 1999 S. 386 [387]). 어떤 주장이 보충이나 제한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면 사실을 오도할 위험성이 존재하고(Burkhardt, in: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5. Aufl. 2003, Kap. 11 Rdn. 130; 또한 Sedelmeier, in: Löffler, Presserecht, 4. Aufl. 1997, § 11 LPG Rdn. 64 참조), 그러한 사실을 오도하는 행위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어서 반론보도를 통해 조그만 변화를 가하더라도 없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반론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시각으로는 허위가 아닐 수도 있지만, 동시에 독자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잘못 추론케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원고는 임차희망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수사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수행과정 중이었다는 사실을 피고와의 인터뷰에서 시인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개인정보의 수사는 원고에게 제기된 형사고발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2004년 3월 30일 일간지 “R”의 지방판 M에 게재된 “A가 범죄기록철을 이용하여 잠재적 임차희망자들을 수사했습니까?” “예, 인정하는 바입니다”라는 인터뷰 진행과정이 사실 그대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옳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원고와 신문사 편집인의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살펴볼 때 어느 주장이 옳

다고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논쟁거리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화인터뷰는 있었고, 원고는 2004년 3월 30일의 그가 스스로 작성한 반론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기 드문 개별사건에서 경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대하여 범죄행위의 의심을 가졌다.

원고에게 수차례 범죄기록철을 몰래 봤다고 전화인터뷰에서 말한 사실을 명백하게 부인하는 내용의 반론 기사를 허용한다면, 편견 없는 일반 독자는 '원고가 직무수행 중에 사익을 목적으로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은 전적으로 근거가 없다'라는 견해를 강요받게 될 것이다.

원고가 2004년 3월 31일 게재를 희망했었던 반론보도의 내용도 비슷한 경우이다. 원고는 특별히 관리되는 범죄기록철을 몰래 조사하여 제3자의 정보를 알아냈다고 그를 비난한 신문기사에 대해,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비난은 그에 대한 형사고발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경찰서에서 사람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조사하도록 한 행위로 형사고발되었다. 신문 기사에서 틀린 내용은 기껏해야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때 특별히 관리되는 범죄기록철을 몰래 봤다는 부분이다. 물론 이는 경찰의 전자정보시스템 내에서는 그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론보도기사의 게재는 ① 구체적 내용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이, ② 은밀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③ 임차희망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 필요한 주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정보취득을 한 행위로 고발된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독자는 여기서 문제가 된 보도가 완전

히 허구이고 현실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형사고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질적인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고,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언론이 강조함으로써 대중들은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기만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반론보도 기사를 게재하게 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의 임차희망자에 대한 사적 정보취득행위가 공무 중에 공무원은 업무상의 특권을 이용한 개인정보접근을 금한다는 주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의 정보비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위경찰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비밀보호의 명백한 위반에 대해 공중이 가지는 이익은 원고가 가지는 권리인 비교적 사소한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와는 다른 측면에서 사소하게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원고는 청소년 범죄의 혐의가 있는 17살의 여성 임차희망자에 대해서만 경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러한 진술은 새로운 공격수단으로써 이미 민사소송법 제353조 제2항에 따라 배제되었다. 1심에서 원고가 경찰정보시스템을 사용한 행위는 보기 드문 사례에 해당되어 더 이상 논쟁이 되지 않았다. 원고는 2004년 3월 30일 반론보도기사의 게재를 요구할 때, 드문 경우지만 그가 사적 목적으로 경찰정보시스템을 사용한 다수의 사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한 보기 드문 개별사례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가 주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를 위반했다는 최초 보도의 핵심적 내용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게 된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경찰정보시스템 대신 경찰범죄기록철에 대한 관련 신문기사의 내용은 확실히 거짓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신문기사의 부정확성은 의미가 크지 않고, 반대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를 인

정하는 경우 독자들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여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그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신문기사가 표현하고자 한 본래의 의도를 놓치게 된다.

그러한 방식의 개인정보비밀 침해에 대한 비난을 통하여 신문보도가 의미하는 사건의 개요가 잘 드러난다. 허가되지 않은 사적 조사에 대하여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산자료목록을 사용했는가는 광범위한 대중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무시될 수 있는 것이다. 원고가 개인정보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비난받지 않았고(항목 4),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지 않는(항목 3) 인상을 자아내는 표현이 관련된 부분에서만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 원고가 반론보도 기사를 작성하여 이러한 표현(이 경우에는 거짓이 된다)을 의도했다면 원고의 반론보도에 대한 기대는 법을 남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실을 과도하게 되는 반론보도의 형식은 반론 기사를 게재하고자 하는 희망과 모순된다.

피고는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진상을 규명하는 기사를 작성하든지 또는 원고의 상이한 반론보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진실과 허위에 걸쳐져 있는 반론보도의 긴장관계 내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이의제기방법이 너무 광범위하다 관점 하에서 토론되어진다.

실제사건에서 이러한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어 보다 장황한 해명을 필요로 할 때, 당사자에게 간략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반론보도의 의무와 함께 진상에 대한 편집 기사가 같이 게재될 수 있을 것이다(Wenzel/-Burkhardt, Kap. 11 Rdn. 1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실제 상황에 대해 반론보도를 조절하게 되면 어떤 경우든지 그 범위가 너무 넓게 확대될 것이다. 너무 장황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반론보도기사의 게재를 신청하면 기각될 위험성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출처 : AfP 36. Jahrgang Heft 4 - 2005 SS. 368 - 370.

번역 : 권 형 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